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
----------	----

제출년월일 : 2018. 7.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기금운영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금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증감
합계(7건)	8,247,752	8,227,752	20,000
통합관리기금	349,095	349,095	0
사회복지기금	3,304,246	3,304,246	0
체육진흥기금	1,295,594	1,295,594	0
식품진흥기금	68,544	48,544	20,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2,840	112,840	0
재난관리기금	1,561,797	1,561,797	0
옥외광고정비기금	48,404	48,404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07,232	1,507,232	0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